

의안번호	제 382 호
의 결 연 월 일	2009년 6월 일 (제 281 회)

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

제 안 자	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장
제안연월일	2009년 6월 일

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

의안 번호	382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09. 6. .
제안자 : 첨단의료복합단지
유치특별위원장

□ 주문

- 2009년 6월 30일까지인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2009년 9월 30일까지로 함.

□ 제안이유

-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유치 시 우리 도가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 및 국가발전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초대형 국책사업으로,
- 현재의 특위 활동기한(2009. 6. 30.)고수 시 입지 확정 전 특위 활동기간이 종료되어 특위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,
- 첨단의료 복합단지 최종 입지선정 시까지 유치 지원 활동을 계속하기 위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.

□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: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(특별위원회의 설치)

관 련 법 령

□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(특별위원회의 설치)

-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